

울산 송정지구 C1블럭 금강펜테리움(2차) 입주자모집공고(안)



시영:  하이아트 건설 시공:  금강주택

목 차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4
1. 공급내역	-----	6
- 승인번호 / 공급위치 / 대지면적 / 공급규모	-----	6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7
- 임대대상 / 임대금액 및 납부일정	-----	7
- 임대기간 및 조건변경	-----	8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	9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9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0
- 특별공급 공통사항	-----	10
- 특별공급 세대수	-----	12
- 특별공급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	13
- 다자녀 특별공급	-----	13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6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17
6.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9
- 일반공급 공통사항	-----	19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	20
- 일반공급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	21
- 일반공급 청약 신청방법	-----	22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24
7. 계약체결	-----	26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26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27
- 계약조건	-----	28
8. 기타	-----	29
- 대출안내/입주자 사전방문/입주예정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29
- 임대보증금 보호관련 사항/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매각기준/ 부대복리시설	-----	30
9. 유의사항	-----	30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30

10.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 여건 및 설계 관련 유의사항	----- 33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33
- 단지 내부여건 및 설계고지사항	----- 35
- 단위세대 관련 고지사항	----- 38
- 기타 유의사항	----- 4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유의사항	----- 41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규정	----- 41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42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42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42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44
- 견본주택 위치	----- 45
- 임대계약 문의번호	----- 45

울산 송정지구 C1블록 금강펜테리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본 아파트의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아니므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1순위 제한사항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 이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은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이 주택은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규정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를 특별공급 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므로,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울산 우정혁신도시 이전대상 부서의 종사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고령자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co.kr>) 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7.03.31.)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규정에 의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00. 00.) 현재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본 주택에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지역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5.12.29. 공포·시행되었으나 당해 주택은 이 법 시행 이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2014년 4월 14일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으로 경과 규정에 따라 (구)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을 따름.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구)「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1)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 호 (2017.00.0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C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 지상 25층(필로티포함) 5개동 3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 304세대 중 특별공급 51세대 포함(다자녀 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세대,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14세대)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10년 공공건설임대)

(단위 : m², 세대)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 대 별 계 약 면 적 (m ²)					세대별 대지비분 (m ²)	공 급 세 대 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 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총 (특별 면적 비율)세대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소 계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민영 주택 (임대)	2017000000-00	99.0000	99.0000	25.7568	124.7568	63.4315	188.1883	66.4502	218	21	6	10	181	12
	2017000000-00	90.7154A	90.7154	25.2060	115.9214	58.1233	174.0447	60.8894	44	4	1	2	37	2
	2017000000-00	90.7642B	90.7642	25.8872	116.6514	58.1546	174.8060	60.9222	42	4	1	2	35	2

■ 임대조건

(단위 : m²,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해당동	계약 구분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증 도 금(40%)				잔금(50%)	월임대료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2018.10.22)	(2019.01.21)	(2019.04.22)	(2019.07.22)	(입주지정일)	
99.0000	218	201,202,203,204	표준	150,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75,000,000	820,000
			전환	299,0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149,500,000	110,000
90.7154A	44	204,205	표준	139,000,000	13,900,000	13,900,000	13,900,000	13,900,000	13,900,000	69,500,000	760,000
			전환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138,500,000	90,000
90.7642B	42	204,205	표준	139,000,000	13,900,000	13,900,000	13,900,000	13,900,000	13,900,000	69,500,000	760,000
			전환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138,500,000	9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 층별, 향별, 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은 (구)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증처: 주택도시보증공사]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시행령에 규정한 비율로 분담한다.
- 상기 임대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화재보험료 등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임대기간 및 조건변경

- 임대기간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임대주택(단, (구)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 및 3호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 임대조건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1년차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구)「임대주택법」제20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5% 범위 내에서 인상 할 수 있음.
- 표준 임대조건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535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전환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함.
-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으로 분양 전환시 분양가에 가산될 수 있음.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임)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구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분양전환가능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분양전환이 가능함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은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울산 송정지구 C1블록 금강펜테리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무관함.

(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택지비	건축비	계
99.0000	99,779,813	219,290,765	319,070,578
90.7154A	91,429,956	203,379,242	294,809,198
90.7642B	91,479,141	203,196,487	294,675,628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10%, 제46조(노부모부양자)3%, 제47조(이전기관)5% 범위 내에서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것으로 봄

특별공급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구분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단, 청약저축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47조 3항]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구분 3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

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할 수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면적지정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함으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99.0000	90.7154A	90.7642B	계
다자녀 특별공급	21	4	4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1	1	8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10	2	2	14
합계	37	7	7	51

▣ 특별공급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다 자 녀 노부모부양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017.05.30.(화) 09:00~17:30 ~2017.05.31(수) 09:00~15:00	당사 견본주택
		다 자 녀 노부모부양	2017.05.31.(수) 10:00~15:00	
	당첨자 선정	2017.05.31.(수) 17:00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일시는 특별공급 신청접수 사정에 따라 시간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선정 및 발표일은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 발표일과 동일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지역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청약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청약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 10년 이상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타 본 입주시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서 발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당사 분양사무소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편부, 편모, 미혼모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5.25.)현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지역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함.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가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자와 청약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p>※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p>

	제출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5% 이내)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5.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7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함.
 - 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라) 그 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1세대내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자격:

-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기관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하기로 확정된 날(지방이전계획 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후 착공일을 말함)로부터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함)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함
- 2)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만 해당함. 다만,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
- 3)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음
- 4) 상기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함)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됨.

•신청방법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housing.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하시기 바람.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접속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 혁신도시 울산송정지구C1 금강펜테리움 ⇨ 유의사항 확인 ⇨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및 본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신청 완료

•신청기간

인터넷 청약 시간은 2017.05.30.(화) 09:00~17:30, 2017.05.31.(수) 09:00~15: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압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입주자의 선정방법 :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6)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25.)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 신청시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일반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 택 형(m ²)	순 위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임대)	99.0000 90.7154A 90.7642B	1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 가점제 접수, 1주택자는 추첨제 접수(100% 가점제선정) (1순위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2주택이상인 자는 1순위 접수 불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을 갖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분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2) 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 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추첨제(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17.03.31.)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금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신청순위	청 약 접 수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 발표	
	일 자	장 소 및 시 간	일 자	장 소
1 순 위	2017.06.0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접수 (08:00~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2017.06.09.(금)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및 당사 건본주택 게재
2 순 위	2017.06.0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접수 (08:00~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 www.ap2you.com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2순위는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접수가능)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은행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접수 유의사항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개시일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신청 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 1 순 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 순 위 : 주택청약 취급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입자 중 बैं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취급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대상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시(08:00~17:30): 인터넷 बैं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거래은행 창구 방문 청약시(09:00~16:00):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취급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2017.06.09.(금)) 익영업일(2017.06.12.(월))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대상	환불장소	신청금 납부방법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청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2)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방문 청약 신청시 구비사항 (일반공급 청약대상자 청구 접수시에 한함)

※ 아래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에 한하며, 해당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2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본/지점에 비치) • 청약저축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 •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 신청자 입회하에 아래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장애인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당첨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최하층 세대를 우선 배정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 취소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의 전산추첨결과 예비당첨자(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선정된 자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당첨자 추첨일: 2017년 06월 17일
- 예비당첨자 추첨장소: 분양사무소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상기 예비당첨자 추첨일 오후 시 이전까지 분양사무소에 도착해서 예비당첨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외의 대리인이 예비당첨자 참가 신청 시에는 예비당첨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1부를 지참하시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7. 06. 09. ~ 2017. 06. 18.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 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 코드 5#) ※6월15일 이후 서비스 중단
	이용기간	2017. 06. 09. ~ 2017. 06. 18.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 06. 09. (08:30) ※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하여 발송함.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대 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 고
정 당 당첨자	2017. 06. 14.(수) ~ 06. 16.(금) 3일간 (시간 : 10:00 ~ 16:00)	당 사 분양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계약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우리은행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현금 수납 및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분양사무소에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금 용 기 관	납 부 계 좌	예 금 주
BNK 경남은행	207-0055-1939-00	(주)하이아트건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당첨자)의 책임임]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및 영수증 • 계약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지정된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람)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기타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배우자 신청시 당첨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1통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1통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1통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분증, 인감 - 당첨자 인감도장 - 위임장 1통 (계약장소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① 순위자의 경우 각 당첨 구분의 주택소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가 정한 기간 이내에 고의성 없이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할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향후 1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해당 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 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전대인 및 전차인등 모두가「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8] 기타

■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주택형별 대출금액은 99.0000㎡는 세대당 170,000,000원, 90.7154㎡는 세대당 150,465,116원, 90.7642㎡는 세대당 150,465,116원이 대출되며, 준공 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거나 사업주체가 상환 예정임.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납부한 경우 전환보증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음.

■ 임대주택 매각기준

- 임대주택매각시기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 단 파산,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의무기간 이전에 매각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1개소 포함),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

9]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지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전환 이후 가능함)
-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 함.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 단지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사무실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인쇄물상의 전시품목 안내를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임대계약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인쇄물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람.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홍보사무실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 울산 송정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

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 시기 바람

-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인쇄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사무실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본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시공사인 (주)금강주택이 할 수 있으며, 그 각종 통지 등으로 인한 효과는 계약자에게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임대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임차인에게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각 및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적 양도사실을 통지한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각 및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임대기간 종료 후 본 임대주택의 매각(임대 또는 일반분양)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체가 결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임대기간 종료 후 본 임대주택을 관련법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수 있다.

10]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 여건 및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1. 울산송정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4-436(20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5-10(2015.01.26)호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45(2015.07.02)로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었고,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라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2.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3.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6.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7.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8.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당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음.
9. 당해지구와 산업로(국도7호선)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대로2-63호선)중, 동해남부선 횡단구간(대로2-1호선) 부분은 동해남부선 철로 이설 후 설치가 가능함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0. 당해지구 인근에 동해남부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한 후 당해 아파트를 청약,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11.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12.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3.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하천, 경관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 사업주체와 무관함.
14. 당해지구는 인근 울산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항공기 소음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5. 준공 전 국토교통부 비행검사를 실시하여 항행안전시설 전파장애 발생여부를 확인 후 항행안전시설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축물을 제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을 해야 함.

16. 본 아파트 단지는 도로인근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당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7.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관할관청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18. 당해 지구 내에는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계약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19.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철도,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20.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1. 당해지구 내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향후 학생 수용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사업계획 변경, 주택 공사 진행상황, 주변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에 따라 학교 신설여부와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2.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3. 당해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전입 또는 입학하는 중,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학교군인 송정화봉학교군과 북부학교군에 배치 가능(예정)함.
24. 초등학생은 화봉초등학교 교실 증축 후 배치 가능(예정)함. 그러나 학생 배치 계획은 송정지구 및 북구지역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5.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설립허가)와 학생배치계획·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26.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27. 당해지구 및 사업부지 인근에 축사 3개동이 위치하고,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파악되어 소음 및 냄새유발 등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8.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9.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30. 송정택지지구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익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익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31.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합니다.
32.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3.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 없으며, 노선결정, 운

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및 설계고지사항

1.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사업승인도면의 내용에 준하여 설치됨.
3.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입주시에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이나 동표시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색채 및 조경자문, 현장여건, 입면차별화 등에 따라 단지 내 주동 및 상가 또는 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시설입면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색채, 측벽 로고의 위치, 조경, 세부식재 계획, 야간조명, 옥상, 조형구조물 등이 변경,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5.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6.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7.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써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준공도면에 반영함)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8.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9.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10.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석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11.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D/A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부 세대에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배출된 공기에 의해 환경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12.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외 운동시설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3.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 및 1층 세대는 다소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견본 주택 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14. 단지 배치상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5.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리침, 무동력흡출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6.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단지 내부 시설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되거나,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단지 외부의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18.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9.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20.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갑”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을”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21.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22.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대지면적은 시설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각 세대 대지지분면적이 소수점이하 변경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정산처리를 하지 않음)
 23.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24.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음.
 25.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이 불가함.
 26.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7.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8.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29.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단지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일부는 설계변경 될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30. 단지 차량 출입구 부분은 주거부분과 비주거(근린생활시설)부분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비주거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되어 있음.
 31.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32. 일부동의 일부층 부분의 경우 일부만 필로티가 위치하고, 나머지 일부는 세대가 위치하오니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33.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3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단지내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등의 경우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들의 위치, 규모에 대하여 필히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35.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의 위치, 모양,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36. 지하1층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진입도로의 접근성으로 인해 일부 점포간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본공사시 도로와 단지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7.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8. 커뮤니티시설이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39.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40.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41. 사용검사 후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경로당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42. 대지면적은 시설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3.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4.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판매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45. 아파트 옥탑 경사 지붕은 시공안전상 경사지붕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6.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47.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48.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9. 단지 일부구간의 레벨이 단지 외부의 도로 레벨보다 낮은 구간이 있으니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및 설계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사항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한, 단지 외부의 도로 레벨은 관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0. 각동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1. 부지 경계부분의 경사면과 옹벽높이는 현황도로와 인접부지 레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2. 단위세대 내 배수구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53.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하천 등)은 추후 도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54. 근린생활시설 옥상바닥에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니 해당세대는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55.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가구 및 운동기구 종류, 수량은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과 마감재도 추후 인테리어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6.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위치 및 크기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57.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는 130만 화소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설치, 운영자가 자체 설치해야 함.
58.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오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로 인해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59. 201동 전면 주차장 진출입램프, 202동 전면 근린생활시설 및 좌측면 단지내 주출입구 시설로 주차차단기 설치로 차량 출입 경보음 및 소음 또는 차량 불빛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등이 발생할수 있음.
60.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생활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2개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1. 저층 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62. 203동, 204동 인접 지하공간에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저수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63. 주동 저층부(필로티 포함)는 일부 석재, 석재뿔칠, EPS몰딩, 외부용 수성페인트 마감임. (단,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64. 단지 내 일부에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천창이 동 주변에 설치됨.
65.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동에 따라 다름.
66.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 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67.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68.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69.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함.
70. 단지 내 조경시설, 정원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71.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보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2. 근린생활시설은 201, 202, 205동 정면에 계획되어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3.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구획 설치될 예정이며, 출입구는 아파트 차량 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됨.
74. 주거동 옥상의 조형물은 본 공사 시 그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5. 203동 전면 및 202동 후면, 204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 205동 우측면에 유아놀이터, 203동 후면과 205동 후면 및 204동 전면측에 주민운동공간, 203동 좌측면에 전망쉼터, 201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203동 하부에 휘트니스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76.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활용도에 따라 외산 자재가 사용될 수 있음.

▣ 단위세대 관련 고지사항

1.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2. 계약자(이후 "계약자"라 함은 "입주자"를 포함하여 지칭함)는 분양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결정한 선택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자재 매입 및 공사일정과 관련하여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3.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4. 일부세대는 세대내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마감자재 테스트 부착 등의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5. 발코니 확장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증감 및 벽체 돌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확장부위에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접한 면은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7.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8.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9.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10. 발코니주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11.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2.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 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3.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15. 세탁기실에 세탁기와 실외기실 철재문짝의 간섭으로 열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16.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상부장 후면은 천정 몰딩이 설치되지 않음. / 수전, 우오수 선홈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창호 개폐방향 및 사양은 견본주택 기준임.)
17.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목 자재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18. 본 공사시 신발장내부에 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19. 건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임.
20. 공사 시 각 세대 욕실의 타일 코너면에는 전용 타일 (PVC)비드가 설치됨.
21. 각 세대 침실1의 도어에는 모티스타입(키 잠금장치)의 도어락이 설치되고, 기타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키잠금 안됨)의 도어락이 설치됨.
22.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 각 주택형별 선택사항에 따라 마감 및 가구설치 모양이 달라지며, 계약시 선택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변경이 불가함. (건본주택 참조)
24. 본 공사시 세탁실 벽에 점검구가 설치됨.(단 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음)
25. 건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본주택 가시설물 또는 모델 하우스 자체의 소방, 환기시설로 본공사시 인허가된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위치와 사양 등이 건본주택의 경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천정형 냉,난방기는 건본주택 자체의 냉,난방설비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26. 가변형 벽체는 건식벽체로 설치되므로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과 같은 방음 효과는 떨어져 실별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27. 세대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피공간의 실 사용면적은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8.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29.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분양카달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30. 저층부 마감이 석재로 시공될 경우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Size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1.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32.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3.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34.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35.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6. 단지내 도로에서 저층세대는 시선차단이 안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37.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 환기 방식을 적용하고, 다용도실(발코니)에 설치되며 기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있음.
38. 안방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음
39. 에어컨 냉매배관은 안방은 벽부형, 거실은 스탠드형을 기준으로 설치됨
40. 주방 개수대 하부장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뒷면은 타일 시공하지 않음.
41.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와 겹치는 타입은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42. 단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43. 일부 발코니에는 청소용 급수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44.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45. 저층 세대 외벽 마감재는 주출입구 측벽 일부만 석재로 시공되며, 나머지 구간은 석재 뽀칠로 시공되며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6.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 판단기준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사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47. 실 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 바닥 난방 시공 시 배관 및 마감구배 등에 의하여 바탕마감 및 단열재의 치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48. 욕실 및 발코니, 현관 타일면의 줄눈 간격은 건본 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9. 세대 실외기실 창호(내,외부)는 에어컨 가동시 개방하여 사용하여야 함.(추후 안전사고, 기능저하우려)

■ 기타 유의사항

1.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3.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5.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6. 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7.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8.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9.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10. 본 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11.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12.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다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13.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울산시청, 한국도로공사, 철도사업단,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4.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15.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16.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7.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8.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19.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20.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1.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2.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3.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4. 사업주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권 및 매도인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함에 동의함.
25.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 함.
26.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27.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28.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29.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0. 법적기준치에 따라 허용되는 지반공사 및 토목공사 등은 공사실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1. 단지 서측, 204동 좌측면, 205동 좌측면으로 높이 5m, 길이 105m의 방음벽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망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유의사항

1.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울산송정택지개발지구와 산업로(국도7호선)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대로2-36호선)중, 동해남부선 횡단구간(대로2-1호선) 부분은 동해남부선 철로 이설 후 설치가 가능함을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규정

- 상기 아파트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건축물로 인증 받았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3항에 따라 에너지 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 받았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다음 각호에 따라 표시합니다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화장실 급배수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단소음(★★★★), 외부소음(★)
 2. 가변성(★★), 수리용이성(★), 내구성(★)
 3. 조경(★★),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친환경인증제품사용(★★), 수자원절약(★★★★), 에너지절약(★★★★)
 4. 커뮤니티시설(★★★★), 보행자도로(★★★★), 교통부하저감(★★★★), 사회적 약자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체계적인 현장관리(★★★★), 효율적 건물관리(★★★★)
 5. 화재·소방(★), 수평 피난안전(★★★★)
- ※ 성능등급 표시 : ★★★★★ : 1급, ★★★★ : 2급, ★★★ : 3급, ★ : 4급
- 상기 아파트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건물 AA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 용
고효율기자재	변압기	적 용
	전동기	적 용
	급수펌프	적 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 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 설비		적 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감 리	소 방 감 리	전 기 감 리	통 신 감 리
회 사 명	(주)유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탑이앤지(주)	(주)진전기엔지니어링	탑이앤지(주)
감리금액	1,038,564,560	38,500,000원	417,046,000	8,8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7-102-0000100호	44,502,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대보증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임대되는 복리시설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식회사 하이아트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2109층(대치동, 금강타워)
	등록번호	893-87-00140
시공회사	상 호	주식회사 금강주택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등록번호	110111-0313314

▣ **건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97-2번지 금강펜테리움 모델하우스

▣ **임대계약 문의** : ☎ 1899-777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사무실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